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1104
번 호	

제출일자 : 2019. 6. 12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의료급여법」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의 근거 범위 정비 (안 제1조)
- 나.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 (안 제2조)
- 다.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변경 (안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료급여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2019. 5. 8. ~ 5. 28.(20일간)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
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을 삭제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으로 하
고, “10,000원 미만” 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삭 제>-----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

- 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